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91호      2021. 9. 2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054호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추모  
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 개정안, 삼척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안 ----- 2
  
- 삼척시 공고 제1063호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 처분 공고 ----- 23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공고 제2021-1054호**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삼척시장사시 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삼척시장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 개정안, 삼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삼척시민 중 장기등기증자를 우대 및 존중하고자 장기등기증자를 위한 삼척시 추모공원 사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삼척시 추모공원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 2015년 자연장지 개장시 책정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삼척시 추모공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사망자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화장 장려금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추모공원 사용료의 면제대상의 추가 및 감면사항의 신설(안 제14조)
- 장사시설 중 자연장의 사용료 개정(안 별표2)

(현재) 단장: 130,000원 / 합장: 170,000원

(개정) 단장: 260,000원 / 합장: 340,000원

- 화장 장려금 정의의 개정(안 제2조)

(현행)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개정)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을 처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화장 장려금 지원기준의 완화 및 지원대상의 추가(안 제3조)

가. 지원기준의 완화

(현행)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연고자

(개정) 사망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연고자

나. 지원대상의 추가

- 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보호자

- 화장 장려금 지원제외대상의 축소(안 제4조제2호)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비

- 용어 정의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장사시설에 관한 정의

(현행) 봉안시설, 자연장지

(개정) 일반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정의  
   (현행) 등봉동  
   (개정) 성내동 21통 ~ 24통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정의  
   (현행) 등봉동 주민  
   (개정) 성내동 21통부터 24통까지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 지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원  
     : 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
-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지원  
     : 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 성내동 22통 주민
- 주민지원금의 용도의 추가(안 제5조제1항)
   - 각 주변지역의 공동사업 및 각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사업 등 복리증진 사업
- 지원사업 신청시 주민의 동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
   - 주민지원사업 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3일까지 삼척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2) 전화 : 033-570-3851

3) 팩스 : 033-570-3138

4) 전자우편 : [pun2986@korea.kr](mailto:pun2986@korea.kr)

####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광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할”을 “면제 또는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1. 전액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다.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 전 장기기증을 하였을 경우

### 2. 50퍼센트 감면: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시민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별표 2 자연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장	단 장 1.5㎡	410,000	260,000	100,000	50,000
	합 장 1.95㎡	510,000	340,000	120,000	50,00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1호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장 사용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연장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등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u>면제</u>할 수 있다.</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p> <p>2. 「<u>국가보훈 기본법</u>」에 따른 희생·공헌자(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p> <p>3. 그 밖에 <u>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u></p>	<p>제14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면제 또는 감면</u> ----- -----.</p> <p>1. <u>전액면제</u></p> <p>가.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p> <p>나. 「<u>국가보훈 기본법</u>」에 따른 희생·공헌자(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p> <p>다. <u>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 전 장기기증을 하였을 경우</u></p> <p>2. <u>50퍼센트 감면: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시민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u></p> <p>&lt;삭 제&gt;</p>



[붙임 2]

## 관계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립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

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치른”을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을 처리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따라 연고자”를 “따른 지원대상자”로, “화장일로”를 “화장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li> <li>3. (생략)</li> </ol>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u>치른 사람 및 유언 분묘를 개정하여 화장한 골분을 처리한</u> -----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3조(지원대상) <u>장려금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u>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망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u></li> <li>2. <u>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정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u></li> <li>3. <u>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u></li> </ol>

<p>제4조(지원 제외대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u>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u></p> <p>3. (생략)</p> <p>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u>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u>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4조(지원 제외대상) ----- ----- ----- -----.</p> <p>1.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 <u>다른 지원대상자</u>----- ----- <u>화장일</u>----- --- <u>별지 제1호서식의</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별지 제2호서식</u>----- -----.</p> <p>&lt;삭제&gt;</p>
--	--

[붙임 2]

## 관계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관리하기위하여”를 “관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봉동을”을 “성내동 21통부터 24통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봉동”을 “제2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1. “장사시설”이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일반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동해·삼척 공동화장장을 말한다.

제5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원구분) 장사시설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
2.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 주민 중 성내동 22통 주민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장사시설 주변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주거개선사업
  2. 각 주변지역의 공동사업
  3. 각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사업 등 복리증진사업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숙원사업
- ② 각 주변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변지역별로 주민총회를 거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중 “삼척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중”을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으로, “대상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사시설”이란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말한다.</li> <li>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u>등봉동</u>을 말한다.</li> <li>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u>등봉동 주민</u>을 말한다.</li> </ol> <p>&lt;신설&gt;</p> <p>제3조(주민지원금의 재원) <u>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u></p> <p>제4조(주민지원금의 용도) <u>주민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관리하기 위하여 -----.</p> <p>제2조(용어의 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사시설”이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일반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동해·삼척공동화장장을 말한다.</li> <li>2. ----- <u>성내동 21통부터 24통까지를</u> -----.</li> <li>3. ----- 제2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li> </ol> <p>제3조(지원구분) 장사시설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해·삼척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li> <li>2.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 주민 중 성내동 22통 주민</li> </ol> <p>제4조(주민지원금의 재원) <u>주변지역</u> -----.</p> <p>제5조(주민지원금의 용도) ① <u>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 1. 제2조 제2호의 주변지역 마을회에서 요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

- 1. 각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주거개선사업
- 2. 각 주변지역의 공동사업
- 3. 각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사업 등 복리증진사업
-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

② 각 주변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변지역별로 주민총회를 거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제4조제1호의 사업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2조 제2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구성된 마을회에 대해 세대별로 1회에 한해 시행하되 2014년도 사업도 본 조례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삼척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 대상사업-----.

[붙임 2]

## 관계 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

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삼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1 - 1063호

#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 처분 공고

동해항3단계 북방과제 방파호안 축조공사 및 동해 묵호항 수상 구역 확장사업 수용재결로 인한 소멸로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 처분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 삼척시장

### □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 처분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권자		어장의 위치	면적 (ha)	면허기간	포기사유
		주소	성명				
정치망 어업	정치망 제20-5호	동해시 일출로 1X1	김X수 외1명	삼척시 후진 지선	24	2020.08.21. 2030.08.20.	수용재결 어업권 보상 (동해항 3단계 북방과제 방파호안 축조공사,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확장사업)
	정치망 제06-1호	동해시 일출로 1X1	김X수 외1명	삼척시 후진 지선	11	2006.10.11. 2026.10.10.	
	정치망 제08-1호	동해시 일출로 1X1	김X수 외1명	삼척시 후진 지선	22.5	2019.10.14. 2029.10.13.	